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72
----------	-------

발의연월일 : 2026. 3. 30.

발 의 자 : 강경숙 · 김재원 · 신장식
박은정 · 서왕진 · 임호선
진선미 · 문정복 · 황운하
김선민 · 정춘생 · 이해민
김준형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선도, 피해학생의 사후적 보호에 중점을 두는 학교폭력 대책으로는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적극적으로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학생의 치유·회복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범위에 치유·회복 등을 포함하고,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피해학생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피해학생의 보호 범위에 치유·회복 및 일상 복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 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 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이 심리상담,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학생에게 정신건강 관련 전문단체·병원이나 전문가를 연계할 수 있고, 연계 시 교육감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 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교육감 등은 이를 지체 없이 피해학생 등에게 안내·연계하여야 함(안 제16조의3제2항 신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보호”를 “보호(치유·회복 및 일상 복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요청하는”을 “요청하거나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피해학생이 보호조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전문단체나”를 “전문단체등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에”를 “제7항에”로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이 심리상담,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학생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건강 관련 전문단체·병원(이하 “전문단체등”이라 한다)이나 전문가를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2제4항 후단 중 “제16조제6항을”을 “제16조제7항을”로 한다.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를 지체 없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안내·연계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략)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u>보호</u>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 ----- ----- ----- <u>보호(치유·회복 및 일상 복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 ----- ----- ----- ----- ----- ----- ----- ----- ----- -----.

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 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 ⑤ (생략)

<신설>

요청하거나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피해학생이 보호조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이 심리상담,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학생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건강 관련 전문단체·병원(이하 “전문단체등”이라 한다)이나 전문가를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생략)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수 있다.

⑦ -----전문단체등이나-----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⑨ -----제7항-----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6조제7항을-----.

제16조의3(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① (생 략) <u><신 설></u> <u>②</u> · <u>③</u> (생 략)	제16조의3(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① (현행과 같음) <u>②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u> <u>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원</u> <u>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u> <u>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u> <u>를 지체 없이 피해학생 또는</u> <u>그 보호자에게 안내·연계하여</u> <u>야 한다.</u> <u>③</u> ·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	--